2009학년도

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특수·보건·유치원 포함)

충청남도금산교육청

▣ 목 차 ▣

제1장 총 칙 ····· 3

제2장 신규 임용 ····· 3

제3장 승진 임용 ····· 4

제4장 교감의 전보 ····· 4

제5장 교사의 전보 ····· 5

제6장 계약제 교원의 임용 ····· 10

제7장 전보의 시기 ····· 10

제8장 보 칙 ····· 11

부 칙 ····· 11

별표 1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 12

별표 2 교육경력 평정 학교 급지 일람표 ····· 13

※전보 내신요령 ·····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초등교원(교감,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및 병설유치원 교원(원감, 유치원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 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② 교감, 교사의 전보는 (별표 1)과 같이 인사구역을 설정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교사는 다득점자 우선의 전형원칙을 적용한다.

③ ㉮, ㉯구역 근무자의 우대와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조한 임지 배치로 근무 안정을 기한다.

④ 인사 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원칙은 공개하고 학교장의 내신을 존중한다.

⑤ 교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교사 전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학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신규 임용

제4조(임지 지정) ①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생활근거지 또는 이에 가까운 학교에 임용하도록 하되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전보의 경합이 심한 학교 또는 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와 학기 도중에 임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70세 이상의 노부모 실제 봉양자는 희망할 경우 연고지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승진 임용

제5조(승진임용자의 배치) 교감 승진 임용자는 전보의 경합이 심한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교감의 전보

제6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① 교감의 전보는 동일 인사구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과 근무 실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은 (별표 1)과 같이 설정한다.

② 동일교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하되 벽지학교는 3년으로 한다.

③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파견기간은 소속학교 근무기간으로 한다.

④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 전조에서 규정한 기간 근무한 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 동일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학교경영능력, 생활근거지, 학교 소재 군내 거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④ 교감 전보의 인사구역에 따른 전보 과정 및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교감은 내신서 없이 전보할 수 있다.

직 급	인사구역	전 보 과 정	제한기간
교 감	가	→ 나, 다, 라 → 가	2년
	나, 다, 라	동일 지역 내 타 학교 및 기타 구역	1년
	비고	·벽지학교 재 전입은 가,나,다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5장 교사의 전보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① 교사(보건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포함)의 전보는 동일인사구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과 근무 실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은 (별표 1)과 같이 설정한다.

② 동일교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벽지학교는 3년으로 한다.

③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파견기간은 소속학교 근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수파견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④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교사초빙) ① 학교장초빙제 시행 학교는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초빙공모제 실시학교는 50%, 공모제 실시학교는 30%, 일반학교는 1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단, 기존의 현임교 근무교사의 퇴직, 학교만기등 결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 초빙교사 당해 학교 초빙기간은 과업 수행기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기간 만료 이전에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③ 초빙기간이 만료된 교사는 당해 학교 및 타 학교로 재초빙 임용될 수 있다.

제10조(전보 과정) ① 교사(보건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포함) 전보의 인사구역에 따른 전보 과정 및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직 급	인사구역	전 보 과 정	제한기간
교 사	가	→ 나, 다, 라 → 가	2년
	나	동일 지역 내 타 학교 및 기타 구역	1년
	다		
	라		
	비고	·벽지학교 재 전입은 가,나,다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전형) ① 교사의 전보는 교육경력 평정점, 근무성적 평정점 및 가산점에 의하여 희망 학교별로 작성된 전형조서 등재순위로 시행하며 경합지의 전형 순위는 공개한다.

② 작성된 전형조서의 효력은 학년도 말까지 지니며, 도중 내신포기는 인사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③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
2. 교육경력이 많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2조(평정점의 산출) ① 교육경력 평정점은 최근 5년간의 근무 년수를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하되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회의 근무성적을 다음 표에 의하여 환산 합계한 점수로 한다.

평 어	수	우	미
환 산 점	5	4.5	4

③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현임원 재직 중의 가산점에 한함)

1. 체육, 학예 지도 실적점

등급	전국규모	도규모	군규모	제 한 사 항
1	3.0	2.0	1.5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현임원 재직중의 실적에 한하며, 동학년도 중에는 체육, 학예 중 각 하나씩만 인정
2	2.5	1.5	1.0	
3	2.0	1.0	0.5	

2. 수업연구대회 및 유치원 동화발표대회 실적

교육감 상장을 받은 때에는 1년에 1점, 교육장 상장을 받은 때에는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 중의 이중 실적은 유리한 쪽 하나만 인정한다.

3. 복식학급 담당 경력

복식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과전담교사 근무 경력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경력

연구·시범·실험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주무자 1점, 기타교원 0.5점을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유치원종일반 담당 경력

유치원 종일반을 담당한 교사는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사 1인이 온종일 또는 재편성 종일반 1학급을 9개월 이상 담당한 경우 1년에 1점을 부여한다.

2) 온종일 또는 재편성 종일반 1학급을 원장이 지명한 교사 2인이 연 210일 이상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 2인 모두 1년에 1점을 부

여한다.

7. 학교소재 군 거주 근무 경력

학교소재 군에 실거주 교사에 대하여 6개월에 0.3점을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교육실적유공자

각종 교육실적유공자로서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는 표창 1회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한다.

9. 초빙교사 근무 경력

초빙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0. 재택교육 담당 및 복지원 파견 근무 경력

재택교육 담당 및 복지원 파견 근무 경력 교사는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한다.

11. 교실수업개선(열린교육) 시범학급 담당 경력

교실수업개선(열린교육) 시범학급 담당 경력에 대하여는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7년 실적까지만 적용)

「2005년까지(1년에 1점), 2006-2007년(1년에 0.5점), 2009년부터 인정안함」

12. 발명공작실 및 영재교육 담당 경력

발명공작실 및 영재교육 담당 경력에 대하여는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한다.

13. 자녀 2인 이상 다출산자(남녀 모두 적용)

2007.3.1자 충청남도인사관리원칙 공포일(2006.9.1) 이후 두 번째 자녀 출산자에게는 2점을 부여한다.

14. 특례자 부가점

다음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하되 1점을 가산한다.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대한법률 제4조, 제5조(유족의범위) 해당자

나. 사망 교육공무원의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단, 현임교 경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다. 부부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단, 초,중,고,대학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라. 2급 이상 장애자를 실제 보호하는 자 및 70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

제13조(타시·군, 도 전입자의 임지 지정) ① 가급적 다득점자 순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학교의 남녀 교사, 연령별 분포 비율,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특기 보유 교사는 구역에 제한 없이 관내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전형 전보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우선 전형할 수 있다.

1. 도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학교 주무자 및 체육 육성 종목, 학예 분야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교사
2. 영어교사의 균형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교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 교사
4. 1급 이상 장애부모(본 공문 접수일 현재 기준)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교사(벽지학교는 제외한다.)
5. 통폐합으로 폐교되는 학교 교사(해당학교 근무기간 만료된 자는 제외하며,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6. 셋째 아 이상 다 출산자

충청남도인사관리원칙 공포일(2006.09.01)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하되 벽지학교는 제외한다

제15조(전보의 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폐합 대상교 근무자로서 계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 1년
2. 전보 대상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된 후 부임 불능일 경우 1년
3. 비경합지 학교 근무자로서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4. 체육, 학예분야의 지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체육분야는 도규모 2위 이상, 학예분야는 도규모 2등급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 2년
5. 도지정 이상 연구·시범학교 운영 주무자로 지속적인 연구의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6. 도내 타시·군 전보 내신자 및 교장, 교감 승진 후보자 중에서 금학년도 전출(승진) 가능 예정자 1년

제16조(내신 조건) ① 교감의 전보내신은 동일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교사의 전보 내신은 동일교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자로 하고, 현임교 직전 학교에 재전입은 동일교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학기 도중 정원 감축, 학교 분리, 학교 통폐합에 따르는 전 후임교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③ 교감 및 보건교사는 본군의 교육 발전과 학교 조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일교 근무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 정원 감축으로 인한 타시·군 전출은 당해 직위 본군 다근속 순

으로 한다. 단, 55세이상자는 예외로 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1. 총 경력이 적은 자
2. 생년월일이 늦은 자

제6장 계약제 교원의 임용

제17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준한다.

제7장 전보의 시기

제18조(정기 전보) 교감과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비정기 전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행정상 경고 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할 수 있다)
2.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3. 근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4. 교권침해 및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5. 정원 조정상 불가피한 자
6. 물의 야기자

제8장 보 칙

제20조 본 원칙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법령 및 충청남도교육청 2009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특수·보건·유치원 포함)과 전보 내신 요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원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출산 교원 인사혜택 적용 시기**) 2인 이상 다출산자에 대한 가산점 및 전형전보 예외는 충청남도인사관리원칙 공포일(2006. 9. 1)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구역 적용**) ㉮ 구역의 통합 근속경력은 2008.03.01일 이후의 현임교 경력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교감, 교사)

<table>
<tr><td rowspan="2">인 사 구 역</td><td colspan="2">근 속 기 간</td></tr>
<tr><td>동 일 구 역</td><td>동 일 교</td></tr>
<tr><td>㉮ 추부, 금산중앙, 금산, 금산동</td><td>㉮ 구역내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학교간의 근속기간은 통산한다.
단 2008.03.01부터 적용한다.</td><td rowspan="3">교감은 4년
교사는 5년

전보 유예자는 근무 평정점 “우”이상 이어야 한다.</td></tr>
<tr><td>㉯ 성대, 제원, 진산, 금성신대, 복수</td><td rowspan="2"></td></tr>
<tr><td>㉰ 부리, 남일, 군북, 용문, 금계, 용진분교장</td></tr>
<tr><td>㉱ 남이, 상곡</td><td>벽지학교 근무 기간은 벽지학교로 지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td><td>교감은 4년
교사는 5년
(상곡은 3년)</td></tr>
</table>

(별표 2)

교육경력 평정 학교 급지 일람표

학교급지	대 상 학 교	환산점 (1년마다)
가	○ 추부, 금산중앙, 금산, 금산동,	2.0
나	○ 성대, 제원, 진산, 금성, 신대, 복수	2.2
다	○ 부리, 남일, 군북, 용문, 금계, 용진분교장	2.4
라	○ 남이, 상곡	2.6
타시·도 및 타시·군 전 입 자	○ 최근 5년간의 타시·도 및 본도 ㉮㉯구역에서 근무한 경력	1.5
	○ 최근 5년간의 본도 타시·군에서 근무한 경력	2.0
	○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근무 경력, 특수학교 근무 경력	2.0
비 고		

2009학년도

전 보 내 신 요 령

(유·초등 교원)

충청남도금산교육청

1. 전보 내신 대상

가. 교 감

1) 동일구역 장기 근속자

2) 동일교 4년 이상 근속자(벽지 3년 이상 근속자)

3) 내신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4) 인사관리원칙(이하 “원칙”이라 함) 제1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교 사

1) ㉮구역 근속기간 5년 및 동일교 5년 근속자

2) 벽지학교 3년 이상 근속자

3) 내신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4) 원칙 제1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전보 해당자 중 3월 1일 정기 전보 이후 3월 중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 발령으로 간주한다.(1년 이상 근속 시 적용)

2. 내신의 제한

가. 교 감

1) 제1희망 학교와 제2희망 학교는 지역 급지를 달리한 학교로 한다.

2) 동일교 교장 및 교감의 동시 내신을 가급적 억제한다.

나. 교 사

1) 전보 내신에 있어 희망 학교는 희망내신은 제1희망, 장기근속은 제4희망까지 기입한다.

2) 경합 예상 학교로의 전보 내신에 있어 기본 경력(5년)의 미달 등 전보 전형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자는 내신을 억제한다.

3. 교사 내신 서류 작성

가. 전보 내신자 일람표(서식 2)

1) NEIS 온라인 전보조서에 의해 작성하여 출력한다.
2) (서식 2)의 비고란에 장기근속, 타시·도·군내신, 승진후보자 현황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전보내신서(서식 4)

1) 작성기준일은 2009. 2. 28 현재로 한다.
2) 전보조서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 작성 요령(별도 안내)에 의하여 내신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한다.
3) 학교에서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 마감 후 1부(서식 4)를 출력하여, 내신 당사자와 입력 사항을 대조 후, 교감이 작성(실인)하고 교장이 확인(직, 사인)하여 교육청에 제출한다.
4) NEIS 온라인 전보조서 출력 후 근무성적과 전보점 총합계를 적색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4. 교사 전보 순위 책정 기준

가. 교육경력 평정점의 산출

1) 교육경력 평정은 원칙 제10조의 1항 및 (별표 2)에 의하여 실교육경력(휴직, 연수파견기간,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제외)을 점수로 환산한다.
2) 경력의 평정에 있어 1년 미만의 단수월수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지를 달리하는 전후의 경력 중 1년 미만의 단수월수가 6개월씩일 때에는 유리한 쪽으로 환산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점 산출

1) 근무성적 평정이 해당 직위 1회뿐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근무성적은 당해년도 근무성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 가산점 평정(최근 5년 이내 현임교, 현임원의 실적에 한함)

1) 체육 및 학예 지도 실적점 : 입상 학생 지도자의 점수 평정은 실질적인 지도자 1인에 한하여 인정하되 실적 거양 인정 기간은 최근 5년 이내의 전국, 도, 군대회 입상 실적 중 현임교 재직 실적에 한한다.

가) 체육 분야・・・・・・・・・(1년에 1종목만 인정)

(1) 전국소년체육대회

(2) 전국종별 선수권대회

(3) 도 소년체육대회 및 도 학생체육대회

(4) 도 교육감기육상경기대회(도 학교간 경기대회 단체입상)

(5) 충청남도 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6)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7) 도 교육감기 줄넘기, 수영대회

(8) 본군 학생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평가전에서 개인 입상, 단체입상교 지도교사

(9)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나) 학예 분야・・・・・・・・・(1년에 1종목만 인정)

(1)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본도, 군 교육청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학예경연대회에서 단체 입상한 경우(효・이웃사랑 백일장 대회, 예절실천문화백일장 포함)

(2) 학예경연대회에서 단체 입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교육장 표창(상장)을 받았을 경우

(3)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본도, 군 교육청이 주최하거나 후원한 과학작품전시회, 학생과학발명품전시회,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자유탐구 발표대회, 정보 꿈나무 축제대회, 생활경제, 환경보전사례 발표대회, 창의력 계발을 위한 학력평가, 학력경진・경시대회, 향토탐구대회, 학교폭력 및 흡연예방글짓기대회에

입상하였을 경우(단, 학교폭력 및 흡연예방글짓기대회는 2007년 실적부터 인정함)

(4) 도, 군 교육청 주최 초등학교 음악경연대회 단체입상

2) **수업연구대회 및 유치원 동화발표대회 입상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도 및 군이 주최한 수업연구대회 및 유치원 동화발표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교육감상은 1점, 교육장상은 0.5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동학년도 중의 이중 실적은 유리한 쪽 하나만 인정한다.)

3) **복식학급 담당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복식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교과전담교사 근무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교육부, 도, 군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1년에 0.5점(주무자 1.0)씩 가산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유치원 종일반 담당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원에서 유치원 종일반 지도교사는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사 1인이 온종일 또는 재편성 종일반 1학급을 9개월 이상 담당한 경우 1년에 1점을 부여한다.

(2) 온종일 또는 재편성 종일반 1학급을 원장이 지명한 교사 2인이 연 210일 이상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 2인 모두 1년에 1점을 부여한다.(실질적으로 종일반을 하는 교사에 한함)

7) **학교소재 군 거주 근무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학교소재 군 실거주 교사에 대하여 6개월에 0.3점을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주민등록등재와 학교장 확인서가 있을 때 인정)

8) **교육실적 유공자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각종 교육 실적 유공자로서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는 표창 1회에 1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직속 상급기관에 한하며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

9) **초빙교사 근무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초빙교사로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0) **재택교육 담당 및 복지원 파견근무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재택교육을 담당한 경력과 복지원 파견근무 경력은 1년에 1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한다.)

11) **교실수업개선(열린교육) 시범학급 담당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교실수업개선(열린교육) 시범학급 담당 경력에 대하여는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07년 실적까지만 적용)

「2005년까지(1년에 1점), 2006-2007년(1년에 0.5점), 2009년부터 인정안함」

12) **발명공작실 및 영재교육 담당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에서 발명공작실 및 영재교육 담당 경력에 대하여는 1년에 0.5점씩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학년도에 하나만 인정한다)

13) **자녀 2인 이상 다출산자(남녀 모두 적용)** : 2007년 3. 1자 충청남도인사관리원칙 공포일(2006.9.1) 이후 두 번째 자녀 출산자 에게 2점을 부여한다.

14) **특례자 부가점**(상한 1점)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대한법률 제4조, 제5조(유족의범위) 해당자

(2) 사망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가 생활근거지로 내신하였을 때에 적용한다. (다만, 자녀는 미혼의 경우에만 적용 받는다.)

(3)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다만, 초·중·고·대학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4) 2급 이상 장애자를 실제 보호하는 자 및 70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

5. 전형 전보 예외자의 내신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전형 전보 예외자는 학교장의 내신 또는 요청에 의하여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체육종목 지도자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본도 체육대회 입상 학생 지도자

2) 특수학급 설치교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한 자가 없을 때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6. 전보의 유예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내신서에 학교장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상, 질병으로 유예하는 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내신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은 허위, 누락, 착오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작성자와 확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학교장은 전보내신자의 가산점 및 부가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

다. 특별 전형 및 전보 유예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라. 동일교에서의 전보 내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 정원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타시·도 전출 내신자

2) 특별 전형 내신자

3) 장기근속으로 인한 타시·군 전출자

4) 보건교사 및 유치원교사

▣ 교감 전보내신서 작성 요령 ▣

1.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한자 병기

○ 생년월일란에 만연령 기입(2009.02.28기준)

○ 소지자격증 : 최상위 자격증 1개만 기입 (초교장, 초교감)

2. 경력사항

① 총 경력 : 교원으로 근무한 총경력

② 현 시·군경력 : 현시·군에서의 당해직위 근무경력

③ 현 소속경력 :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④ 현 직위경력 : 현재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⑤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기간과 기관명 (기간은 ③과 같음)

⑥ 현 직위에서 현 소속기관 이전의 기관에 근무한 기관과 기관명

⑦ 현 직위 최초 임용일로부터 위 ⑥에 임용되기 전까지 통산한 기간과 기관명(있는 대로)

※ 교감 승진 후 2개 학교에서만 근무하였을 경우 ⑦항은 공란이 됨.

3. 기타

○ 생활근거지 : 시·군, 읍·면, 동·리 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전보(직)사유 및 특기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장기근속, 기타 내용)

○ 근무실적 : 현임기관 재직 중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만 약기

(서식 1) 22쪽 초등학교 교감 전보내신자 명단은
횡양식으로 별첨 자료

(서식 2) 23쪽 초등학교교사 전보내신자 일람표는
횡양식으로 별첨 자료

(서식 3)

초등학교 교감 전보 내신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호봉	학 력	소지자격
00 초등학교	교감	금강산 (한 자)	남	1950.07.08 (만55세)	39	공주교대	초교감

2. 경력사항

① 총경력	② 현시군	③ 현소속	④ 현직위 경력			
			부 터	까지	기간	부 서
34.06	3.00	1.00	⑤09.03.01	10.02.28	1.00	00초
			⑥07.03.01	09.02.28	2.00	00초
			⑦05.03.01	07.02.28	2.00	00초, 00초

3. 근무성적

2008		2009		평균
총점	석차	총점	석차	
	기입	안함		

4. 생활근거지

5. 전보 희망

제1희망		제2희망	

6. 전보 사유 및 특기사항

7. 근무실적

위와 같이 내신하오니 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8일

0 0 학교장 직(사)인

(서식 4) 초등학교전보내신서 - Neis에서 출력

초등교사전보조서

①		②내신종류	

③ 인적사항	현임교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호봉	소지자격	교육총경력	환산근속경력	현시군근속	현임교근속

④ 내신	희망시군(학교)	1희망	2희망	3희망	4희망	전보사유(적요)	우선전보사유	유예사유	재전입여부

⑤ 교육경력 (5년)	시·군명	학 교 명	구 역	근 무 기 간	년월수	구역점	환산점	교육경력 환산점계

⑥ 근무성적	2005	평 어	환산점	2006	평 어	환산점	소계	근무성적환산점계

⑦ 가산점	지도 및 표창실적	년월일	가 산 내 용	기관명	등급	환산점	지도및표창실적계

⑦ 가산점	교육실적	학 교 명	실 적 기 간	인정기간	배점	교 육 실적계

⑧ 특례자 부가점					특례자

⑨ 참고사항	육아휴직	특수자격	부부별거	징계	의무복무	타시도	타시도전입	1급장애자	부부동시내신	가족교원	가산점 총 계

⑩ 첨부물	1) 4)	전보점	
	2) 5)		
	3) 6)		

확인	담당자	확인	조사	재 심	종 심
	교 감	교 장	장학사	초등담당(과장)	학무과(국) 장

위와 같이 전보 내신 합니다.

2008. 1 . .

(서식 5)

연구학교 전보유예 요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명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현임교 근무기간	근무성적
					20 . . 부터 20010. 2. 28 까지 (년 월)	

2. 유예사유

연구학교 지정사항			연구주제	연구업무 담당 내용
지정 영역	지정 년도	종료 년도		

3. 학교장 의견

위와 같은 의견을 들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까지(1년간) 전보유예를 신청합니다.

2010년 2월 일

0 0 학교장 직(사)인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 귀하

(서식 6)

체육지도자 배정 요청서

구 분	내 용		
체육종목 육 성 교	초등학교		
종 목		성별	
지도대상	학년 명		
현재수준			
지도자의 구비여건			

상기 체육 지도 종목의 지도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일

학교장 직·사인

(서식 7)

전보 유예 요청서

1. 인적사항

소속	직명	성 명 (한자)	생년월일	현 임 교 근무경력	학교소재지 및 구분	비고
		( )	(만 세)			

2. 유예사유

3. 붙 임 : 학교장 의견서 1부.

위와 같은 의견을 들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까지(1년간) 전보유예를 신청합니다.

2010년 2월 일

0 0 학교장 직(사)인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 귀하

(서식 8)

노부모 봉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노 부 모 성 명 :
5. 노부모생년월일 :
6.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0. 2.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 귀하

▣ 노부모의 생년월일은 2010. 2. 28 기준(1940. 2. 29 이전 출생자)

▣ 본 인사관리원칙 공문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봉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봉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서식 9)

장애인 부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장 애 인 성 명 :

4. 장 애 등 급 :

5.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　)급 이상 장애(　　)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0. 2.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 귀하

▣ 인사관리원칙 공문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부양해 온 경우만 해당

▣ 반드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부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특례자 구비서류

대 상	구 비 서 류	수
1. 국 가 유 공 자	1. 국가유공자 증명서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 발행) 2. 호적등(초)본	1통 1통
2. 사망교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와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1. 학교장이 발행한 사망교원확인서 2. 호적등(초)본 3. 자녀의 재학 증명서	1통 1통 1통
3. 정원 감축 전출	1. 학교장 확인서	1통
4. 70세이상 노부모 봉양자	1. 주민등록등(초)본 2. 학교장 확인서 : 실제 봉양 여부	1통 1통
5. 장애자 가족	1. 2급이상 장애자 증명서 2. 주민등록등(초)본 3. 학교장 확인서 : 실제 보호 여부	1통 1통 1통